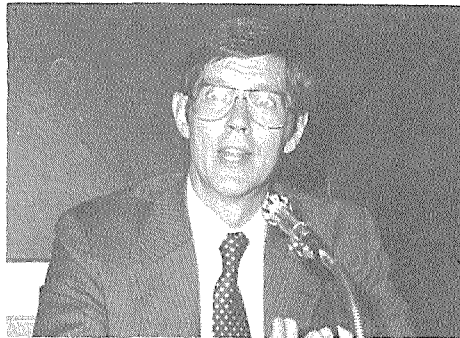


油價制度의 國際比較와 油價自律化의 方向

Edward N. Krapels

(美國 에너지省 · 石油政策顧問)

오늘 발표할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우선 石油價格의 規制와 非規制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부 基本的인 問題에 돌아가 價格規制의 惠澤은 무엇이며, 그 損失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다.



本人은 워싱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레이건 行政府의 自由市場政策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레이건 大統領은 石油産業을 포함한 모든 美企業에 대한 대부분의 規制를 철폐했다.

두번째로 언급할 내용은 각기 다른 國家의 價格規制問題이다. 11개 先進工業國의 價格規制方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韓國의 油價制度를 검토해 보겠다. 各國의 規制方法은 차이가 있어 흥미롭다.

레이건 大統領이 취임하기 이전에는 美國의 石油産業은 30년대 이후 계속 規制를 받아 왔다. 美行政府는 原油價格을 規制하거나 原油供給量을 規制했다. 73년부터 美國은 原油를 輸入해 오고 있다. 美行政府는 各精油會社의 原油確保量에 대해서도 影響력을 行使했다.

本人은 價格規制의 보다 一般的인 內容을 말하겠다. 石油價格의 自律化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規制해야 할 狀況과 規制하지 않아야 할 狀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強調하고자 한다. 이러한 兩極端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各國의 實情을 살펴보면 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規制의 損益關係를 연구해 본 결과, 規制措置가 一般적으로 産業뿐만 아니라 消費者에게 불리한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이건 大統領이 취임하여 規制措置를 철폐하자 모든 美國人들은 그의 決斷을 환영했다.

세번째로 本人은 이러한 分析을 韓國의 實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本人은 韓國의 石油産業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本人의 見解에 대하여 여러분의 理解를 바라겠다. 그러나 本人의 見解가 韓國石油價格政策의 方向을 모색하는 데 있어 有益하리라 생각한다.

理想的인 市場

經濟專門家들에 의하면, 石油의 自由競爭市場이 理想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理想的인 世界에서는 國際石油市場이 自由스럽게 되고 石油消費國의 國內石油市場도 自由競爭市場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經濟學者라면 이러한 制度

美國의 價格政策

의 長点を 증명하기 위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制度下에서 原油價는 生産原價를 반영할 것이며, 따라서 사우디의 輕質原油의 價格은 배럴당 34달러 대신에 배럴당 5달러, 10달러 또는 15달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製品價格역시 原油費, 精製費 및 各製品價値에 대한 消費者의 評價値를 반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理想的인 制度下에서는 政府 역시 石油에 대한 規制를 하지 않을 것이다. 政府는 他商品에 稅金을 부과하는 것처럼 石油에 대해서도, 稅金만 부과하고, 揮發油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制度에서는 또한 世界石油資源의 最適化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들이 이러한 制度下에서 살게된다면 世界는 현재보다 더 윤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經濟學者들이 말하는 理想的인 世界에서 살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한 制度가 얼마나 效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분명히 이와같은 世界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

不安定한 石油情勢

OPEC 各國은 原油에 막대한 稅金을 부과해 오고 있다. 原油供給은 대략 7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파동을 겪었다. 1946년의 中東戰爭, 1952년 이란 革命, 수에즈運河를 폐쇄케한 1956년의 中東戰爭, 1967년의 中東戰爭, 1968년의 나이지리아의 內亂, 1973년의 아랍石油禁輸措置, 1979년의 이란回教革命, 1980년의 이란·이라크戰爭으로 原油供給崩壞가 일어났었다. 이는 經濟學者들이 생각하는 理想的인 供給狀況은 아니다.

石油産業자체를 보더라도 石油産業이 教科書的인 理論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aul Frankel의 유명한 分析에 의하면, 石油会社들은 항상 競争的인 企業처럼 행동하지는 않으며, 石油産業은 自由市場의 완전한 競争보다는 카르텔形態의 構造를 志向하고 있다.

供給波動時에는 政府가 石油産業이 競争的인 企

業처럼 행동하지 말도록 壓力을 가하고 있고, 價格引上보다는 기존 고객들에게 石油를 割當하도록 強요하고 있다.

政府의 개입

石油輸入國의 경우, 政府의 간섭은 다양하다. 政府는 揮發油와 기타 製品에 막대한 消費稅를 부과하고, 石油製品과 原油에 輸入쿼터를 적용하기도 하고, 石油企業의 許可制度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関稅를 부과하기도 한다.

先進工業國의 경우, 10個國중 9個國에서는 政府가 石油産業으로 하여금 90日分의 非常石油備蓄을 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備蓄에는 막대한 經費가 소요된다. 非常時 대부분의 政府는 供給分配 또는 割當을 실시하며 自由市場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10個 先進工業國중 9個國과 100個開發途上國중 99個國에서는 政府가 製品價格을 規制하고, 이를 市場機能에 맡기지 않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基本的인 點을 얘기하는 것은 石油가 世界貿易에서 뿐만 아니라 대다수 國家의 國內去來에서도 一般商品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世界各國政府는 石油를 規制하기 위해 稅金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規制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規制의 目的이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規制目的은 항상 同一하지는 않다. 非常備蓄의 目的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 答은 비교적 명확하다. 즉 그 目的은 石油供給波動時 石油를 非常供給하는 것이다. 石油製品價格政策의 目的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 答은 결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韓國의 規制目的

韓國의 油價制度에 대해서 살펴보자. 政府는 왜 製品價格을 規制하고 있는가? 將來製品價格政策의 目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分명한 몇개의 目標를 설명하겠다.

消費者 利益의 극대화

製品價格政策의 目的은 韓國의 國民所得을 極大化하고 消費者의 福祉를 極大化하는 것이다. 이것은 基本的인 目標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價格算出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를 위해 市場規制의 철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韓國의 石油製品價格을 國際現物市場 水準까지 내리게 되면 消費者들의 利益은 極大化될 것이다.

國家安保의 보호

둘째로 石油製品價格改定의 目的이 國家安保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美國에서도 많이 論議되고 있다. 輸入쿼터制가 시행되던 60년대 美國에너지政策의 目的은 不安한 石油資源에 대한 지나친 依存度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韓國은 어떻게 製品價格決定方式(Product Pricing Program)에 의해서 國家安保를 보호하고 있는가. 現在의 方式은 國家安保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方式下에서는 製品輸入業者가 韓國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韓國의 精油産業은 現在의 方式下에서 성장하였으며, 韓國은 현재 精製施設의 自給 自足狀態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國家安保에 有益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美國에서도 이에 대해 同一한 見解를 갖고 있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精製施設의 自給自足の 必要性에 대하여 점차 論難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世界精製市場은 매우 큰데 비해 製品市場은 매우 弱勢에 있기 때문에 石油製品은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世界각처로 이동되고 있다. 그러므로 國家安保를 理由로 精製施設의 自給自足에 추가로 投資하는 것은 利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精油産業의 보호

石油製品價格政策의 세번째 目標은 精油産業의 保護라고 볼 수 있다. 韓國이 현재와 같은

精油産業을 갖고 있는 한, 同産業의 保護를 바랄 것이다. 精油産業을 보호하는 경우 일정한 費用이 발생한다. 만약 國際競争으로부터 精油産業을 보호하게 되면 理論적으로 精油會社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精油會社는 國際市場에서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精油産業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石油製品價格을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經濟開發計劃에의 부응

네번째 目標은 인플레이를 年 10%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現 5 年經濟社會開發計劃의 目標을 달성할 수 있도록 石油價格制度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目標을 위해서라면 韓國의 石油市場을 自律化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韓國의 石油價格은 下落할 것이고, 인플레이의 年 10%선 억제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한 네가지 目標중에서 어느 目標을 韓國의 에너지政策수립에서 最優先 順位로 할 것인지 本人의 立場으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目標가운데 일부는 서로 배타적이라는 事實은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은 네가지 目標을 하나의 政策에 전부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價格規制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本人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韓國에서 規制의 目標가 현재는 무엇이며, 과거에는 무엇이었으며, 앞으로는 또 무엇이겠느냐하는 점이다.

이제 두번째 內容으로 넘어가 설명하겠다. 우선 價格規制의 目的이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明心해 주기 바란다. 本人은 各國의 價格規制의 目標를 설명하겠으며, 이에 대한 說明가운데 여러분들이 規制의 범위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規制國家의 유형

이 탁자를 規制의 범위로 생각해 보자. 右側 끝을 自由市場이라고 하고, 左側 끝을 完全規制市場이라고 해보자. 右側 끝 自由市場쪽에는 美國, 英國 및 西獨이 있다. 右側끝에서 조금 떨

어져서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있으며, 조금 더 떨어져서 日本이 있고 프랑스는 더 左側으로 있으며 韓國은 더욱 더 左側에 치우쳐 있다. 이 탁자의 맨 左側에 台湾과 印度와 같은 나라들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分명한 것은 價格規制의 범위도 각각 다르고, 그 規制도 매우 다양하다는 事實이다. 이들의 規制범위를 몇개의 범주로 묶어보는 것이 좋다. 本人은 이를 네개의 범주, 즉 네개의 規制形態로 나누어 說明하겠다.

政治的 規制国家

첫번째 形態는 政治的 規制国家이다. 이에 포함되는 나라는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日本 및 韓國등이다. 政治的 規制国家는 政府가 製品價格의 規制에 막대한 影響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며, 製品價格이 어떻게 變動될지 石油会社들은 잘 모르게 된다. 즉, 製品價格變動의 時機나 幅은 완전히 政府의 裁量權에 달려있다.

典型的으로, 이러한 形態의 規制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石油價格이 오를 때는 業界에서 바라는 製品價格의 引上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石油價格이 내릴 때는 신속하게 製品價格을 억제하기 위하여 價格上限線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價格을 引下시키는 경향이 있다. 政治的 規制国家에서는 政府가 国内石油市場에 대하여 막대한 影響력의 行使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制度를 필수불가결하게 開發해 왔다.

連動化 国家

두번째 범주에 드는 나라는 價格決定 公式에 依한 規制国家(Formula Control Countries)들이다. 이 범주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등이 포함된다. 이들 国家도 石油價格을 規制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는 權限의 일부를 포기하고 石油製品의 價格變動이 換率, 原油費, 人件費 등의 變動과 連動되어 自動的으로 결정되는 公式(模型)을 만들어 놓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 制度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政府가 統制權限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事實을 石油会社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石油会社들은 製品價格이 언제 變化될지 잘 알 수 없는 政治的 規制制度보다는 價格變動을 비교적 미리 예측할 수 있고, 自動的으로 價格이 變動되는 이 價格連動制를 바라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價格變動幅을 결정함에 있어서 石油産業의 諸費用을 참작하는 매우 훌륭하고 매우 복잡한 價格規制模型을 개발했다.

프랑스는 諸費用을 고려하는외에 주변국가의 市場價格이나 現物市場價格까지도 고려하는 制度를 창안했다. 이러한 制度를 도입한 理由는 石油会社들에게 똑같은 종류의 마진을 주도록 하고, 또한 石油会社들이 海外市場에서도 利益을 보도록 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現物市場의 原油, 가스오일 및 揮發油價格과 西独,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大陸市場의 價格을 조사하여 平均價格을 산출하고 이 平均値를 原價와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價格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目的은 競争要素를 도입하고 完全規制制度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石油会社의 效率性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다.

原油價 規制国家

세번째 범주에 속하는 나라는 石油製品의 價格이 国内에서 生産되는 原油의 生産價格에 따라 결정되는 國家들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國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캐나다, 멕시코와 대부분의 OPEC 國家들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에서는 原油價格을 매우 낮은 水準으로 規制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石油製品價格은 原油費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캐나다의 揮發油價格은 美国보다 40~50센트 싸며, 멕시코의 揮發油價格은 美国價格의 1/2~1/3에 불과하다. 이 制度는 분명히 韓國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制度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自由市場 國家

네번재 범주에 드는 國家는 매우 制限되어 있다. 즉 이 범주에 속하는 나라는 自由市場國家 3~4 個國뿐이다. 本人이 알고 있는 나라로는 美國, 英國, 西獨과 스위스뿐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製品價格에 대한 政府의 規制가 전혀 없다. 여기에서 다시 왜 政府가 石油價格을 規制하느냐에 돌아가서 이를 조금전에 說明드린 國家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外國의 規制目的

유럽과 日本의 規制目的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고, 또한 그 理由는 나라마다 다르다. 스웨덴을 예로 들어 보면, 規制는 國民福祉의 일부이다. 政府는 勞動者 및 産業과 일종의 社會契約를 맺고 있으며, 石油製品의 價格決定은 이 社會契約의 한 示現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생각하고 있는 先進産業社會가 石油價格問題를 처리하는 方法의 일부이다.

다른 國家에서는 政府가 外國人會社에게 暴利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더 重要한 要因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精油施設을 美國이나 英國의 多國籍 石油會社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非常時 이들 國家에서 暴利를 취해간다는 것이 石油製品價格을 規制하게 된 眞實한 理由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理由는 國家安保를 理由로 精油産業을 보호하려는 政府의 決定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주로 實施되고 있다. 프랑스는 石油專門家들로부터 “金도금된 새장”(Gilded Cage)이라고 불리어왔으며, 이는 石油會社의 價格決定과 供給活動이 政府의 規制로 제약되어 있지만, 政府는 石油會社들이 항상 利益을 볼 수 있도록 規制를 해 왔다는 事實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自由市場인 西獨에서는 81년 石油會社들이 막대한 赤字를 기록했다.

多樣的 規制目的

그러므로 Gilded Cage는 國內精油會社들이 계속 稼動될 수 있도록 그들을 保護해 주고 多國籍石油會社들이 프랑스에 原油供給을 계속할 수 있도록 保護해 주려는 프랑스 政府의 意圖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國家安保論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問題는 프랑스에서 論難이 되고 있으며, 너무 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日本의 경우는 價格規制가 본질적으로 政治的 構造의 일부이다. 日本通產省은 行政指導를 申奉하고 있으며, 日本産業政策에서도 전혀 問題가 되지 않고 있는 정도이다.

價格規制의 國際的인 例를 조사해 보면, 政府가 規制하려고 하는 特別하고 眞實한 理由를 알 수가 있다. 그 理由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70년대 美國의 價格規制의 主理由는 單純히 石油會社의 暴利를 억제하자는 데 있었다.

즉 이것은 單純히 價格引上으로부터 消費者들을 保護하려는 것이었다. 韓國의 石油價格政策을 고려해 볼 때, 어느 外國의 例도 韓國에 결정적으로 좋은 敎訓을 지적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韓國에 맞는 單一模型없어

問題는 어느 國家도 韓國에 알맞은 價格制度를 갖고 있지 않다는 事實이다. 어떤 사람은 國際石油市場을 돌아보고 프랑스制度가 理想的이다. 또는 日本의 制度가 理想的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本人은 石油製品價格政策을 本質的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일단 이처럼 분류되면, 韓國實情에 맞도록 聚斂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表-1〉에 나와 있는 各國의 規制內容 가운데 어느 부분을 선택하든지 製品價格政策과 製品輸入規制사이의 關係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韓國石油市場의 眞正한 自律化는 製品輸入과 製品價格에 대한 規制가 철폐될 때 비로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規制狀態에서 非規制狀態로 移行함에 있어서 현재의 價格이나 輸入規制措置를 점진적으로 完備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主 要 外 國 的 石 油 價 格 制 度 比 較

	連 動 化 國 家		統 制		國 家		原 油 價 統 制 國 家		自 由 市 場 國 家		
	데 렐 란 드	에 벨 기	프 랑 스	이 탈 리 아	오 스트 리 아	스 웨 덴	캐 나 다	독 일	美 國 · 英 國	自 由 市 場 國 家	
1. 基本原則	Formula Control 價格	最高價告示	行政指導	最高價告示	一部統制價	全製品統制	原油價統制	自由市場價	自由市場價	自由市場價	
2. 規制形態	最高價告示	最高價告示	行政指導	最高價告示	最高價告示	最高價告示	監視價	自由市場價	自由市場價	自由市場價	
3. 價格決定方式 및 價管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製品生產費 (原油費, 輸送費, 精製費) 變動과 連動 • 現物市場價와 의 連繫, 現物市場의 製品價와 內精製品の 比較에 의해 變動幅 決定 • 製品別 最大 引上限度를 設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左 同 • 國內生產費外 國際市場의 製品價價間의 比率에 따라 價格決定模型 設定 • 現價格과 새 價格의 差異가 一定基準을 超過할 때 最高價에 反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政指導로 不當한 乘引上안을 防止 • 燈油, LPG 등 一般大衆 需要製品에는 “強力한 行政指導”을 實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式原油價, 輸送費, 換率의 變動時 統制製品價 調整 • EC의 價格水準을 考慮하여 決定 • 引上要因을 製品價로 反映하는 期間은 45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重質燃料油, 케 트 油, 나 프 타, 潤滑油中間製品, 航空油는 監視價格, 潤滑油 完製品, 輸出品은 自由價格 • 價格上線의 調整原因: ① 原油價上昇, ② 이 터 리 · EC間의 精 油利益差 ① 의 경우 1個月, ② 의 경우 ±4% 또는 6個月 마다 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價格調整의 要因: ① 原油 費, ② 輸送費, ③ 精製費, ④ 利潤마진 • 政府가 費用 引上分을 算定, 統制製品과 非統制製 品間에 配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製品에 對해 最高價 告示 • 價格基準; 國內價格과 現物市場價格中 낮은 價格을 基準으로 決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油輸入費 補算에 의한 原油價平準化 (輸入原油의 平均價와 自國産原油와의 差額을 税金에서 補算) • 製品價規制는 解除되었으나 地方間 去來 石油에 대한 價格規制는 持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뮈르에 의한 獨立系 會社 保護措 置 存統 ① 獨立系會社 供給分 障 ② 輕油價를 獨立系會社 보다 10pf 높게 維持 하도록 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市場價 • 自由市場價 • 自由市場價 • 自由市場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由市場價 • 自由市場價 • 自由市場價 • 自由市場價

價格自律化의 영향

價格을 自律化할 경우, 韓國經濟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 質問에 대한 回答은 本人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단지 本人은 유럽市場의 例를 들어 보겠다.

自由市場인 西獨의 경우, 国内石油價格이 現物市場의 價格變化와 아주 밀접하게 變動하는 傾向이 있다. 国内價格은 現物市場價格만큼 오르는 않고, 또 現物 市場價格만큼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두 價格 사이에는 相關關係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国内價格과 現物市場價格의 關係가 상당히 制限되어 있다. 프랑스市場은 需給 및 價格波動時나 供給과 價格下落時나 現物市場價格을 반영할 수 없도록 規制되고 있다.

따라서 西獨市場은 現物市場의 추세에 따라 민감하게 價格이 變動하고 프랑스는 市場이 規制되어 있어 價格이 점진적으로 變化하게 된다.

韓國의 價格制度는 현재처럼 供給過剩일 때 国内價格이 現物市場價格보다 월등히 높도록 되어 있다. 반면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 때는 그 反對였다. 즉 韓國의 国内價格은 現物市場價格보다 훨씬 낮았다.

프랑스는 西獨과 韓國의 兩極端中間에서 石油價格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다.

즉, 프랑스는 中道를 걷고 있으며, 国内石油價格은 他國이나 現物市場에 비하여 매우 안정되어 있다.

油價自律化는 점진적으로

結論的으로 말해서 현재 韓國의 制度와 自律化사이에 한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國際的인 例를 검토하고 또 韓國의 精油会社와 國民들의 利益을 분석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In small steps) 價格自律化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本人이 말한 “한 걸음씩”이라는 것은 長期間(Over very long period of time)이라는 뜻이다. 本人은 이러한 어려운 分野에 있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의 自律化추진 과정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本人은 精油会社들

이 対処方案을 計劃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油價自律化 方案

本人은 여기에서 하나의 試案을 제시하겠다. 이 計劃案은 신중한 研究에 근거한 것은 아니며, 단지 論題로 제시하는 것이다. 83년에 第1 段階措置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現制度를 換率과 原油價의 變動에 따라 製品價格을 自動적으로 조정하는 油價自動連動制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해인 84년에는 이 連動制를 價格決定公式(模型)에 의한 規制(Formula Control)로 바꾸어 일부 油種, 예를 들어 벵커-C油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製品輸入規制는 第1段階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90년 輸入規制 計劃

2년후인 86년에는 벵커-C油에 대한 輸入規制를 해제하고, 88년에는 기타제품 즉 輕油와 揮發油에도 Formula Control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製品輸入은 계속 規制된다.

90년에 가서, 기타製品에 대한 輸入規制는 철폐되고 韓國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경험한 바와 같이, 모든 製品에 대하여 Formula Control을 實施하는 것이다. 그리고 製品의 輸入規制도 모두 철폐된다. 95년, Formula Control方式을 폐지하고 완전 自律化가 되는 것이다.

国内石油市場이 한 狀況에서 다른 狀況으로 移行하는 데 이렇게 長時間이 걸린다고 해서 과장된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意見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이보다 훨씬 짧은 期間內에 自律化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

